

학습자료

-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저작권 & 자산관리 이해 -



1차시. 소프트웨어의 보호 및 관리

1.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는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 명령(음성이나 영상 정보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hardware)라고 불리는 컴퓨터 기계장치부에 대응하는 개념이지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보호하고 있으며 그 정의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와 컴퓨터프로그램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흥법에 하나는 권리보호법에 규정되면서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에 대한 법률이 별도로 있었으나 2009년에 저작권법과 통합하면서 지금은 저작권법에 특례규정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례규정에 의한 것은 그것대로 특례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일반 저작권법 조항으로 따라 보호 되는 것이지요.

처음에 컴퓨터는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다가 차츰 하드웨어와는 별도로 개발되어 판매되는 소프트웨어가 등장하게 되고 그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어떤 방법으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특허로서 보호받을 여지도 많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기술적 사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이는 자연법칙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이용한 발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를 다른 발명들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이지요.

이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보면, 미국은 1981년의 Diamond v. Diehr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모두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이전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허성을 최초로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1984년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제정하였으며, 1998

년 심사 기준을 개정하여 종래에 방법발명으로만 청구되던 발명에 대하여 기록매체라는 물건발명으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의 보호방식으로서 국제조약과 각국의 입법례가 취하고 있는 방식은 대체적으로 저작권법 체계에 따른 보호입니다. WTO/TRIPs 협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은 원시코드와 목적코드를 불문하고 베른협약상의 어문저작물로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을 저작권법 체계로서 보호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문자부호로 특정한 내용을 표현하는 창작물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작권의 무방식주의가 특허권에 비하여 훨씬 쉽게 권리를 인정할 수 있고 보호기간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컴퓨터프로그램 선진국인 미국 등에서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를 저작권법체계로 보호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따르게 됩니다. 우선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이 매우 어려우며, 복제하지 않고 단순히 사용만 하는 경우 저작권법으로 문제삼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요. 또한 권리부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비밀상태에 놓이므로 연구 및 개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프로그램저작권은 그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하며 창작 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물론 이 보호기간은 내년부터 70년으로 연장되겠지요)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물의 하나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나 한편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먼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있습니다. 저작권이 표현에만 미치고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아예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지요.

우리 저작권법상 제외 대상 :

1.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프로그램에서 지시·명령의 조합방법

② 다음으로는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과는 상이하게 규정한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

그럼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에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때에 한한다)

한편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정당하게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으며,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일반 저작물과는 조금 상이한 제도가 있는데 바로 프로그램의 임치입니다. 임치제도는 SW거래 시 저작권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소스프로그램 및 기술정보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임치해 두고, 폐업·파산·자연재해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임치물을 사용권자에게 교부하여 당해 SW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치제도는 중소 SW업체들이 우월한 지위를 내세우는 대기업에 맞서 어렵게 개발한 SW의 저작권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될 수 있으며, SW 사용자도 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넘겨받지 않고 사용권만을 제공받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소프트웨어 구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56조, 57조)에 반드시 임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프로그램 임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2. 소프트웨어 관리

소프트웨어의 관리란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 또는 처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기관등에서 이를 잘못 관리할 경우 라이선스 비용 증가나 법적 위협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의 관리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대규모의 기업들이나 공공기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내외의 소프트웨어자산관리 관련 연구자들은 기업이나 기관 내에서 적극적인 SAM(Software Asset Management) 프로세스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수량, 필요예산, 계약조건 등을 우선 검토하고, 구입 후에는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보유 소프트웨어 관리, 소프트웨어 설치현황에 대한 점검 및 그에 따른 조치 등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SAM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소프트웨어 운영에 있어 위험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등을 위반했을 경우 민·형사 책임문제, 바이러스 등에 의한 서비스 중단위험, 관리 미숙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악화 위험, 부정적 언론보도에 따른 이미지 손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용절감 효과입니다. 신규 구매시 적정 비용 및 수량 산정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우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협상 시간 및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예측과 예산 수립, 프로세스 품질에 따라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 지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입니다. 보다 완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정보 제공을 통해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고, 수요에 대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새로운 시스템과 기능을 선보일 수 있으며, 수요에 밀접한 서비스 제공은 사용자로 하여금 접근 가능성을 높여주고, 결국 고객 만족도를 높여주는 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SAM에 대해 국내에서도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졌고 공공기관의 정품사용 의무화와 기업시장으로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8개 조항으로 구성) -> 전체 내용 링크
 - 담당자/기관 소속직원 교육 강화(각 연 1회 이상)
 -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 책임자 지정(기관관리책임자, 부서관리책임자)
 - 소프트웨어 관리 실태점검(연 1회),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발견하면 폐기 등의 즉각 조치

한편 저작권법상의 양벌 규정에 단서조항(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배제) 도입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라인 배포와 자산 관리 툴 및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SAM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AM에 관한 국제 동향으로는 현재 국제 표준이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SAM에 관한 국제 표준으로는 2006년 5월에 발표된 ISO 19770-1가 최초로서 27개로 분리된 SAM process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발표된 ISO 19770-2는 SAM Tag 표준화와 다양한 운영체제 또는 플랫폼에 상관없이 소프트웨어 인식정보 추출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으로 소프트웨어의 버전, 라이선스 번호, 패키지 제작자, 언어, 제품명 등 개별 소프트웨어의 정보를 총괄하여 작성된 표지이며, 다양한 컴퓨터 운영체제 또는 플랫폼에 상관없이 소프트웨어의 인식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사용권한의 불확실성을 결정하거나 감소시키는 태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ISO 19770-3를 제정하기 위한 워킹그룹이 가동 중입니다.